제정 1976.12.28

개정 1979.08.03.

" 1984.08.23.

" 1986.03.18.

" 1991.03.07.

" 1995.03.23.

" 2001.02.22.

" 2004.01.30.

" 2008.02.22.

" 2010.01.29.

" 2013.05.30.

" 2018.02.13.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회는 사단법인 한국양봉협회(영문표기 Korea Beekeeping Association) 이라 칭한다.

제2조(사무소) 본 회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또는 세종정부종합청사 인근에 둘 수 있고, 필요에 따라 각 시·도에 지회와 각 시·군에 지부를 둘 수 있다.

제3조(목 적)

본 회는 회원의 권익보호와 회원 간의 정보교류를 통한 상호 협력으로 양봉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꿀벌에 의한 농산물의 화분매개 촉진으로 농산물 증산에 기여하며, 양봉산물 생산증대로 양봉농가의 소득증대를 선도하고 양봉산물 사후관리로 소비자를 보호하며 나아가 국민건강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 업) 본 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 1. 꿀벌의 보호증식, 종봉개량과 우량종봉의 보급 및 사양관리에 관한 지도사업
- 2. 양봉산물 생산 증대를 위한 밀원식물 보호와 조성사업
- 3. 양봉산물 품질검사를 통한 품질향상에 관한 지도사업

- 4. 양봉농가 기술교육 및 홍보활동
- 5. 꿀벌의 질병예방과 치료에 관한 연구사업
- 6. 국제기구를 통한 양봉 신기술 연구 및 정보교류에 관한 사업
- 7. 양봉기자재 개발 지원 및 보급 사업
- 8. 국내·외 양봉제품개발관련 시장조사 및 시장개척 사업
- 9. 양봉산물 수급대책 수립 및 소비확대에 관한 사업
- 10. 양봉산물의 제품개발 연구사업, 특화단지, 브랜드 사업
- 11. 양봉자조금 사업
- 12. 기타 양봉산업 발전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사업

제 2 장 회 원

제5조(회원의 자격) 본 회의 회원은

가. 일반회원 : 국내에서 양봉업을 하는 생산농가

나. 특별회원 : 양봉산물 또는 관계 기자재를 판매하는 사업자, 양봉에 관련된 연구자, 양봉과 관련된 단체 또는 법인 관계자로 구분한다.

제6조(회원의 가입) 제5조에 의한 회원자격이 있는 자가 본 회 취지에 찬동하여 가입 하고자 할 때에는 본 회가 정하는 가입원서를 관할 지회장의 추천으로 본회에 제출하여 등록을 함으로써 회원이 된다.

제7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 1. 회원으로서 품위준수 의무
- 2. 정관 및 기타 제 의결 사항과 제 규정 준수의무
- 3. 회비납부 의무

제8조(회원의 권리) 회원은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을 갖는다.

제9조(포 상) 본 회의 발전을 위하여 현저한 공로가 있는 회원 또는 개인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징 계) ① 회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시·군 지부장 및 시·도 지회장 주관으로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한 후 결정된 사항을 협회 이사회 의결을 거쳐 당해 회원에 대하여 경고, 자격정지, 변상, 제명 등의 징계조치를 취할 수 있다.

- 1. 회원으로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 2. 본회의 정당한 사업을 방해할 때
- 3. 회원의 품위를 실추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본회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해를 끼칠 때
- 4. 제7조의 정관 및 제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 5. 정당한 사유 없이 회비납부의무를 2년 이상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회비 납입이 있을 때까지 회원의 각종 권리를 유보한다.(자동 자격정지)
- 단, 동조 제1호~4호의 규정에 의거, 징계로 인하여 회원자격이 정지된 기간에는 연회비 납입이 정지된다.

제11조(회원의 자격상실) 회원은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회원자격을 상실한다.

- 1. 사 망
- 2.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자
- 3. 제 명
- 4. 탈 퇴
- 5. 정당한 사유 없이 회비납부의무를 5년이상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12조(회원의 탈퇴 및 복권)

① 회원이 본회에서 탈퇴하고자 할 때에는 탈퇴서를 지부 및 지회를 거쳐 본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징계자(경고, 자격정지)의 징계복권 및 회원자격 부여는 지부 및 지회총회를 거쳐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제13조(회비의 환불) 회원의 자격을 상실하였을 경우에는 미도래 선납회비는 반환할 수 없다.

제 3 장 임 원 및 직 원

제14조(임원의 정수) 본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 1. 회 장 1인
- 2. 부회장 2인
- 3. 이사 19인 이내(회장, 부회장, 당연직 이사(시·도 지회장) 및 상근임원(전무) 포함)
- 4. 감 사 2인

제15조(임원의 자격)

- ① 임원의 자격은 회원이어야 한다. 단, 상근임원은 회원이 아니어도 된다.
- ② 임원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지 않은 자이어야 한다.
- ③ 임원은 협회 가입일로부터 7년 이상 회비가 납부 되어야 하고, 2년 이상 미납된 사실이 없어야 한다.

제16조(임원 선출 및 해임)

- ①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단, 회장(1인), 부회장(2인), 감사(2인)는 총회에서 출석한 대의원 결의로 선출하고, 당연직 이사는 지회총회에서 선출된 자로서 총회에서 회장의 임명으로 인하여 등기이사로 취임한다.
- ② 회장, 부회장, 당연직이사(시·도 지회장), 감사의 각 입후보자에 대한 투표결과 최고득점자 순으로 한다.
- ③ 회장, 부회장, 감사 입후보자는 총회 20일 전까지 본 회에 등록하여야 하며,

당연직 이사(시·도 지회장) 입후보자는 지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 기한까지 지회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 ④ 상근임원은 회장의 제청에 의하여 이사회의 인준을 얻어 회장이 임명한다.
- ⑤ 당연직 이사(시·도 지회장)는 지회장 사퇴시 이사직도 사퇴한 것으로 본다.
- ⑥ 임원선거는 선거관리 규정에 준한다.

제17조(임원의 임기)

- ① 임원의 임기는 각 3년으로 한다. 단, 회장은 1회 연임할 수 있다.
- ② 임원의 결원 시는 보선을 하되, 피 보선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 ③ 임원의 임기만료 후라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18조(임원의 직무)

- ①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총회와 이사회 및 지회장 회의를 주관하며 업무를 총괄한다.
-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유고시에는 회장의 지명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하며, 선임(다선, 다득표)부회장이 우선한다.
- ③ 이사는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과 긴급을 요하는 업무를 심의·의결한다.
- ④ 상근임원은 회장 및 부회장의 명을 받아 본 회 업무를 주관한다.
- ⑤ 감사는 매 사업연도에 본회의 재산과 업무집행 사항을 2회 이상 감사하여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9조(임직원의 보수) 임직원의 급여기준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20조(고문 및 자문위원)

- ① 본회는 업무상 필요에 따라 고문 및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 ② 고문은 회장의 제청에 의하여 총회에서 추천하고 자문위원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위촉한다.

③ 자문위원은 회장의 자문기관으로 전문분야에 관한 사항을 연구심의 건의한다.

제 4 장 총 회

제21조(직 원)

- ① 본회의 분야별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원을 둔다.
- ② 직원의 채용은 고시 또는 전형에 의하되 공개 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별채용을 할 수 있다.
- ③ 직원의 직책, 임면, 복무 등 인사에 관하여는 규정으로 정한다.

제22조(구 성)

총회는 본회 최고의 의결기관으로 대의원과 임원으로 구성한다.

제23조(소 집)

-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정기총회는 연 1회 회계연도 종료 후 60일 이내에 회장이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 ②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재적이사 2/3이상 또는 대의원 1/3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20일 이내에 회장이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 ③ 총회소집은 개최 10일전에 회의 목적, 일시, 장소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④ 감사는 대의원 2/3이상 동의를 얻어서 긴급 총회를 소집 할 수 있다.

제24조(총회의 부의사항)

- 1. 정관의 제정 및 개정
- 2. 임원·지회장 선거관리규정
- 3. 임원 선출 및 해임
- 4. 수지예산안 및 결산안의 승인
- 5. 사업계획안 승인 및 사업보고

- 6. 이사회가 총회의 직능을 대행한 사항의 승인
- 7. 해산 및 이에 따른 재산의 처분
- 8. 회비징수에 관한 사항
- 9. 기타 필요한 사항

제25조(총회 개회와 의결의 정족수)

- ① 총회는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한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② 정관 개정은 출석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부득이한 사정으로 회의에 출석하지 못한 대의원은 미리 통지한 위임장을 다른 회원에게(회비 완납자) 위임하여 총회 정족수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그 대리인은 회장이 발급한 위임장을 총회 개최 전에 제출하여 대리권을 인정받아야 한다. 단, 그 대리자는 임원선출 선거권은 행사 할 수 없다.

제 5 장 이 사 회

제26조(구성) 이사회는 임원으로 구성한다.

제27조(소 집)

- ①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나 재적이사 2/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회장이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 ② 감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제28조(이사회 개회와 의결의 정족수)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9조(긴급을 요하는 이사회 의결) 이사회 부의사항에 대하여 긴급을 요하는 사항은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으며, 서면의결사항은 차후 이사회에서 추인을 얻어

야 하다.

제30조(부서) 이사회에 다음의 부서를 둘 수 있다.

- 1. 홍보부
- 2. 연구부
- 3. 조사부
- 4. 사업부
- 5. 기획부

제31조(이사회 부의사항)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 1.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예비 심의
- 2. 차입금과 대출금에 관한 결정
- 3. 규정의 제정과 개정
- 4. 회원의 징계(경고, 자격정지/제명 등) 및 복권(회원자격 부여 등) 심의
- 5. 대의원 인준
- 6. 상근임원과 연구소장의 인준
- 7. 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 8. 총회 휴회 중 긴급을 요하는 사항의 대행
- 9. 기타 중요한 사항

제 6 장 대 의 원

제32조(대의원)

- ① 본 회 대의원은 제 2조에 의한 지회 및 지부의 소속회원이 선출한 지회장과 사무국장, 지부장, 대의원으로 한다. 단, 사무국장은 지회장이 호선한다.
- ② 지부는 지부소속 회원이 회기 말까지 회비완납 회원 20명 단위로, 대의원 1인씩 증원할 수 있으며, 20명 이상 10명 단위 증원 시, 대의원 1명을 선임할 수 있다.
- ③ 대의원은 회원을 대표하여 총회에서 의결권과 선거권을 행사한다.

- ④ 대의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 ⑤ 대의원의 선출 및 인준에 관하여서는 규정으로 정한다.

제 7 장 재정 및 회계

제33조(회계 연도) 본 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4조(재 정) 본 회의 재정수입은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충당한다.

- 1. 가입비·연회비 및 특별회비
- 2. 찬조금
- 3. 사업수수료
- 4. 기타 수입금

제35조(예산편성 및 결산)

- ① 본회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은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편성하여 이사회 심의를 거쳐 총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한다.
- ② 결산은 회계 연도 종료 후 총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③ 당해 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과 전년도의 사업실적 및 결산은 회계 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주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8 장 해산과 청산

제36조(해산의 사유) 본 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산한다.

- 1. 총회에서 대의원 2/3이상의 동의로써 해산 결의를 하였을 때
- 2. 회원수가 300인 미만이 되었을 때
- 3. 주무부장관의 설립허가가 취소되었을 때

제37조(청산인)

- ① 본 회가 해산할 때에는 총회에서 선임한 이사가 청산인이 된다.
- ② 청산인은 지체 없이 재산상황을 조사하고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재산처분에 대한 심의를 총회에 부쳐 그 승인을 얻은 후 일간 신문에 공고 하여야 한다.

제38조(청산재산의 처분) 본회가 해산할 때에는 채무를 완제하고 잔여 재산이 있을 때에는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국가 또는 본회와 관계된 법인에게 기증한다.

제39조(준용규정) 본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과 상법을 준용한다.

제40조(시행일) 본 정관은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단, 현재 본 회의 임원의 임기는 2018년 개최되는 제45차 정기총회 때까지로 한다.

제41조(별도규정) 본 정관의 운용상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제정한 내부규정에 의한다.